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 2015. 4.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3년 8월 23일 노영민위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2013. 12. 10)에, 2014년 3월 10일 우윤근위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2014. 4. 14)에, 2014년 5월 12일 김태원위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2014. 11. 13)에, 2014년 10월 31일 장윤석위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4년 12월 22일 정부가 제출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2015. 4. 10)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3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5. 4. 20)에서 심사한 결과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3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2015. 4. 23)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체의 역량과 서비스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관련 서비스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며,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전문기관을 ‘산업재산권 정보화 전문기관’으로 개편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그 효율을 제고하고, 그 밖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을 확대하는 등 발명진흥업무 수행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며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전문기관을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으로 개편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안 제20조, 제20조의3), 특허기술정보센터를 폐지함(안 제21조, 제22조 삭제).

나. 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20

조의6 신설), ‘지역지식재산센터’, ‘발명의 평가기관’,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등록 또는 지정요건에 관한 규제를 완화함(안 제23조, 제28조, 제36조).

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대상에 대학원 학생(특수대학원의 학생은 제외)을 추가하고(안 제26조의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로서 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로 지정하며,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7 신설).

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대상에 산업재산권 출원에 관한 사항과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41조 및 제43조의2).

마. 3년마다 규제를 재검토 하도록 하고(안 제57조의2 신설), 발명진흥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함(안 제59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업재산권진단”이란 발명 및 산업재산권에 대한 종합적인 동향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의 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제6항 중 “불복하거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불복하는”으로,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한다.

제20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산업재산권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20조의2제1항 전단 중 “서비스사업자 등이 신청하면”을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청인”을 “정보이용자”로 한다.

제20조의3의 제목 중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업무 수행”을 “정보화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지정하여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를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이하 “정보화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업무”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을 “정보화전문기관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정보화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정보화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화전문기관의 설립·운영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할 수 있다.

제2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6(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정부는 산업재산권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과 관련된 지식재산 활동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4항 중 “시설, 인력 및 전산장비를”을 “전문인력 및 시설을”로 한다.

제26조의2제3항제4호 중 “재학생(대학원 재학생은 제외한다)”을 “학생(특수대학원의 학생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평가기관을 지정할 때에는”을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으로, “전문인력, 시설, 평가실적 또는 유사업무 경험을 참작하여야”를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로 한다.

제3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신청에 따라”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0조의5의 제목 “(실태조사)”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로 한다.

제4장의2에 제40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7(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제2조제9호나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로서 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회사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된 후 2년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제3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산업재산권”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업재산권(산업재산권 출원을 포함한다)
2. 직무발명
3. 영업비밀(기술상의 정보와 관련된 영업비밀만을 말한다)

제41조제3항제6호 중 “산업재산권”을 “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에 한한다”를 “자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실시에”를 “실시, 직무발명 또는 영업비밀과”로 한다.

1. 산업재산권 출원인

6. 영업비밀(기술상의 정보와 관련된 영업비밀만을 말하며, 이하 제7호에서 같다)을 보유한 자

제50조의3제4항 중 “제21조제5항”을 “제20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특허기술정보센터”를 “정보화전문기관”으로 한다.

제57조제1호 중 “제9조의2제4항, 제20조의3제3항”을 “제9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정보화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제7장에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및 신청절차 : 2015년 1월 1일
2. 제24조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2015년 1월 1일
3. 제28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 2015년 1월 1일
4. 제31조에 따른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2015년 1월 1일
5. 제36조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기준 : 2015년 1월 1일
6. 제37조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2015년 1월 1일

7. 제50조의2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기준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2015년 1월 1일

8.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 2015년 1월 1일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정보화전문기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및 한국발명진흥회의 임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특허청장이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정보화전문기관 및 한국발명진흥회는 제외한다)의 임직원(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의3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및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특허기술정보센터는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의2. (생략) 6. “산업재산권진단”이란 개인 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발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그 발명의 연구개발의 방향 또는 기술도입의 추진 방법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 10. (생략)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① ~ ⑤ (생략) ⑥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하거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등 또는 종업원등은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제2조(정의) ----- -----. 1. ~ 5의2. (현행과 같음) 6. “산업재산권진단”이란 발명 및 산업재산권에 대한 종합적인 동향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의 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 10. (현행과 같음)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불복하는----- ----- -----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 제20조(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2. (생략)

<신설>

3. ~ 5. (생략)

③ · ④ (생략)

제20조의2(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 등이 신청하면 「특허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산업재산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0조의3(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업무 수행) ① 특허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를 대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산업재산권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 5.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① -----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

-----.

--.

② ----- 정보이용자-----

-----.

제20조의3(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 ① -----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이하 “정보화전문기관”이라 한다)
으로 지정하여 제20조제2항 각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업무 -----. <후단 삭제>

② ----- 정보화전문
기관을 -----
-----.

③ ----- 정보화전문
기관 -----
-----.

④ 정보화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화전문기관의 설립·운영 또
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
연할 수 있다.

제20조의6(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정부는 산업
재산권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제21조(특허기술정보센터) ①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선행기술(先行技術) 정보자료를 효율적으로 생산 및 보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정보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기술정보센터(이하 “특허기술정보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선행기술연구를 위한 시설

“영업비밀”이라 한다)과 관련된 지식재산 활동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또는 설비의 제공

2. 선행기술정보의 생산·관리·

분석 및 제공

3. 외부 용역에 따른 선행기술

의 검색

4. 그 밖에 선행기술정보자료

의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사

업

③ 특허기술정보센터를 설립하

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특허기술정보

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인력, 시설, 데이터베이스

및 전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특허기술정보센터는 제2항

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특허기술정보

센터로 등록한 자는 매 사업연

도가 시작되는 날의 1개월 전

까지 그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특허기술정보센터가 아닌 자는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정부는 특허기술정보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 말소 등) ①특허청장은 특허기술정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제21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

<삭 제>

준에 미달한 경우

4. 제21조제6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서를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및 전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 ⑪ (생략)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①·② (생략)

③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1. ~ 3. (생략)

4.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대학원 재학생은 제외한다)

5.·6. (생략)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전문인력 및 시설을 -----.

⑤ ~ ⑪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4. -----

----- 학생(특수대학원의 학생은 제외한다)

5.·6.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제28조(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u>평가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시설, 평가실적 또는 유사업무 경험을 참작하여야 한다.</u> ③ ~ ⑥ (생 략) 제36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u>산업재산권진단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전문인력, 시설, 진단실적 또는 유사업무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u>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u>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신청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을 실시한 경우 진단에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④ (생 략) 제40조의5(<u>실태조사</u>) ① ~ ③ (생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u> ----- -- <u>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u> -----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6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u>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u> ③ ----- ----- <u>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u> -- ----- ----- ----- -----.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의5(<u>산업재산권 서비스업</u>
---	--

략)

<신 설>

에 대한 실태조사) ① ~ ③ (현
행과 같음)

제40조의7(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① 특허청장은 산업
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
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
비스업(제2조제9호나목은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로서
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를 산
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로 지
정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전문회사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
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회사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된 후 2년간 산업재산
권 서비스업 업무 실적이 없
는 경우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①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특허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특허청장이 위원 중에서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 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제3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

-----.

1. 산업재산권(산업재산권 출원을 포함한다)

2. 직무발명

3. 영업비밀(기술상의 정보와 관련된 영업비밀만을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지명한다.

1. ~ 5. (생략)

6. 그 밖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⑤ (생략)

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
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국
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
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국
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대
리인을 통하여서만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1. ~ 4. (생략)

<신설>

5. 그 밖에 해당 권리의 실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② (생략)

-----.

1. ~ 5. (현행과 같음)

6. ----- 제1항 각 호의 사항

④·⑤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① -----

----- 자에 한정한다. -----

-----.

1. 산업재산권 출원인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
까지와 같음)

6. 영업비밀(기술상의 정보와
관련된 영업비밀만을 말하며,
이하 제7호에서 같다)을 보유
한 자

7. ----- 실시, 직
무발명 또는 영업비밀과 -----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① ~ ③ (생략)

④ 해외산업재산권센터의 수익
사업에 관하여는 제21조제5항
을 준용한다.

제56조(권한의 위임 등) ① (생략)

②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기술정
보센터, 협회, 한국발명진흥회,
발명기관의 장(직무발명을 한
당시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변리사법」 제
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7조(청문)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의2제4항, 제20조의3제
3항, 제40조의3제4항 및 제50
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20조
의3제4항-----.

제56조(권한의 위임 등) ① (현행
과 같음)

② -----

-----정보화전문
기관,-----

-----.

제57조(청문) -----

-----.

1. 제9조의2제4항-----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2.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허기
술정보센터의 등록말소 또는
업무정지

3. ~ 5. (생략)

<신설>

2.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정
보화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
는 업무정지

3. ~ 5.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특허청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
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
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지역지식재산
센터의 등록기준 및 신청절차:
2015년 1월 1일

2. 제24조에 따른 지역지식재산
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2015년 1월 1일

3. 제28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 2015년 1월 1일

4. 제31조에 따른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2015년
1월 1일

5. 제36조에 따른 산업재산권진
단기관의 지정기준 : 2015년

<u>제5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특허기술정보센터,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및 한국발명진흥회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u>	<u>1월 1일</u> <u>6. 제37조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2015년 1월 1일</u> <u>7. 제50조의2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기준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2015년 1월 1일</u> <u>8.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 2015년 1월 1일</u> <u>제5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정보화전문기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및 한국발명진흥회의 임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u> <u>② 특허청장이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정보화전문기관 및 한국발명진흥회는 제외한다)의 임직원(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u>
---	--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3. <u>제21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명칭을 사용한 자</u> 4. 5. (생략) ② (생략)	제60조(과태료)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u><삭제></u> 4.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